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폐지제정(안) 계획

□ 추진배경

- (행정규칙 종류 변경) 現 훈령에서 後 예규로 변경
- (폐지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제 형식을 현행화하며 안전조직·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항·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훈령)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 ※ 안전관리 총괄 담당부서로서 안전관리부서 역할 확대 및 구체화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연구원장으로 지정
 - ※ 연구주체의 장(연구원장)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방법 등의 세분화
-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 추진일정

- 의견수렴 ‘24. 1.
-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24. 3.
- 폐지제정안 발령 ‘24. 5.

□ **규정 체계(조항) 재정비**

○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 재정비

분류	(당초) 조항		분류	(변경) 조항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 제4조의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6조(연구실책임자) 제7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제9조(책임과 의무)	⇒	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6조(연구실책임자) 제7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제9조(책임과 의무)
3장 연구실 운영	제10조(안전수칙) 제11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점검) 제14조(건강검진) 제15조(안전표지) 제16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제17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18조(준용) 제19조(유효기간)		3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10조(안전수칙) 제11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점검) 제14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제15조(건강검진) 제16조(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 제17조(안전표지)
-	-		4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18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제19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20조(준용) 제21조(재검토기한)

□ 그 외 주요 변경사항

현행	변경
제3조(용어의 정의) ① 4. <신 설>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안전점검표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용어의 정의) 4. <u>"안전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u>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u> 제13조(안전점검)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화재사고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4.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토(안)으로 심사 등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